

2026년 제2회 경북북부제3교도소 공무직 근로자 (조리원) 채용공고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근무할 공무직 근로자(조리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년 8월 14일

경북북부제3교도소장

1. 선발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예정기관	채용분야	채용직종	선발예정인원
경북북부제3교도소	공무직 근로자	조리원	1명

2. 담당예정 직무

- 급식담당자의 지도를 받아 직원 급식 제공 등 급식관리
- 직원식당 위생 및 청결 관리
- 식자재 및 비품 관리
- 기타 관련 규정 및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등

3. 근무 조건

- 신분 : 공무직 근로자(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 근로자)
- 계약기간 : 무기계약(정년 60세)
- 근무시간 : 1일 8시간
토·일요일(공휴일 포함)은 순번에 따라 근무
- ※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등에 따름

4.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 「법무부 공무원 등 근로자 관리지침」

5. 응시 자격 [적용기준일 : 최종 면접시험일]

- 20세 이상인 자로(2006. 12. 31. 이전 출생자) 공고일(2026. 8. 14.) 기준 법무부 공무원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37조 정년(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가이드라인 상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가이드라인 상 채용결격사유 >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예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단, 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근무지(경북북부제3교도소)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

○ 음식 조리 및 06시 조기출근, 토·일·공휴일 근무가 가능한 자

○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에 따라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 적격인 자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6. 우대 사항 [적용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 우대사항은 응시인원이 5배수 초과일 때만 적용함

○ 조리 관련분야 근무경력(1년 이상, 연차별 차등 배점)

- 관련분야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만 인정
-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하며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상위 1개만 인정)

- 산업기사 : 한식조리, 중식조리, 양식조리, 일식조리, 복어조리
- 기 능 사 : 한식조리, 중식조리, 양식조리, 일식조리, 복어조리

7. 가점 사항 [적용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 가점사항은 응시인원이 5배수 초과일 때만 적용함

구분		부가 점수
법정 가점	「국가유공자법」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 별 만점의 5~1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사회 형평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3%를 초과할 수 없음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단, 법정가점은 취업지원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함

8. 급여 및 후생복지

- 기본급(월급제) : 2,155,880원(세전 2026년 기준)
- 정액급식비 : 매월 160,000원
- 명절휴가비 : 연 2회×1,293,530원(기본급의 60%)
- 맞춤형복지비 : 연 1회×500,000원
-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등

※ 기타 보수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법무부 공무원직 등 근로자 관리 지침」 등에 따름

9.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5배수 이하인 경우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소극적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5배수 초과인 경우 평정 요소별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하고,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적극적 서류전형)
- ※ 적극적 서류전형 기준(응시인원이 11명 이상(5배수 초과)인 경우)

적극적 서류전형 평정 요소별 평가기준		비고
일반 전형요소	자기소개서 평가 - 지원동기의 타당성, 내용의 충실성 및 독창성 등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사실을 바탕으로 종합적 판단	전형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한 평균점수
	직무수행계획서 평가 - 직무에 대한 이해, 직무수행능력, 능력개발계획 등 직무기술서에 기재된 사실을 바탕으로 업무적합성 판단	
전문분야 전형요소	조리 관련분야 근무경력 가점 - 관련 분야에 실제 근무한 경력으로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상 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연 차 별 차등우대
	해당분야 자격증 가점 - 산업기사 : 한식조리, 중식조리, 양식조리, 일식조리, 복어조리 - 기 능 사 : 한식조리, 중식조리, 양식조리, 일식조리, 복어조리	상위 1개 인정
가 점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장애인 가점	

※ 우대 및 가점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함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인성, 전문성, 발전가능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위원이 4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

※ 4개 항목의 평정요소 : ① 소통·공감, ② 헌신·열정, ③ 창의·혁신, ④ 윤리·책임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2차 시험(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위원의 과반수가 4개 항목의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4개 항목 중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처리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 실시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포기, 선발취소, 사전 예고 없는 퇴직)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10. 시험 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채용후보자등록)
'26.08.14.(금) ~ 08.21.(금)	'26.08.19.(수) ~ 08.21.(금)	'26.09.03.(목) ['26.09.04.(금)]	'26.09.10.(목)	'26.09.21.(월) ['26.09.22.(화)~09.25.(금)]

※ 신원조사 결과 회신 후 임용 예정

※ 채용공고는 법무부(www.moj.go.kr)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서류전형 합격자·면접일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응시자는 시험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법무부 또는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제출

나. 접수기간 및 시간

- 2026.08.19.(수)~08.21.(금), 09:00~18:00

다. 접수처 (경북북부제3교도소 총무과)

근무예정기관	소 재 지	전화번호
경북북부제3교도소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231	054) 870-3123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접수처에 본인 또는 대리자가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접수** 가능
- 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가능

※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됩니다.

12. 제출서류 안내

가.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1. 제출서류 총괄표(별지서식 제1호)	○ 응시자별 제출하는 서류 총괄표 작성
2. 응시원서(별지서식 제2호)	○ 응시원서 작성
3. 이력서 1부(별지서식 제3호)	○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4.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제4호)	○ A4 2매 이내로 작성
5.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제5호)	○ A4 2매 이내로 작성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6호)	○ 공통 필수
7.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7호)	○ 공통 필수
8. 조리 관련 업무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1부	○ 우대사항 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연·월)·직위(급) 등을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9.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 중 1종 1부	○ 우대 사항 해당자에 한함
10.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	○ 우대 사항 해당자에 한함
11. 소득금액 증명서(전 근무기간)	○ 우대 사항 해당자에 한함
12. 가점 관련 증빙서류 1부	○ 가점 사항 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 사용금지)

나. 유의사항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채용 확정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별지서식 8>을 참고하여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6.09.21. ~ '26.10.20.

- 제출된 증빙서류는 발행기관에 진위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허위사실 기재 또는 위·변조 시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구분	유의사항
모든 증명서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함 ▶ 제출된 경력 사항에 대하여만 인정함
경력 증명서	▶ 경력증명서는 근무한 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근무부서·근무기간·담당업무가 기재 되어 있어야 함 ※ 발급기관의 전화번호·Fax번호·E-mail 주소를 기재
외국어 작성 증명서	▶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는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

13. 유의사항

- 응시자는 응시원서를 **경북북부제3교도소에 직접(본인 또는 대리자 제출 가능) 제출하거나 우편 접수**해야 합니다.
- 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게 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는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채용계약 체결)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포기, 선발취소, 사전예고 없는 퇴직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면접시험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 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해 부적합한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누구든지 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채용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릅니다.
- 자격요건, 채용절차 및 담당직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북북부제3교도소 총무과(☎ 054-870-31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제1호>

서류전형 증빙자료 제출서류 총괄표

성명	생년월일	응시기관	응시분야
	.	경북북부제3교도소	조리원

■ 작성목록(총괄표)

목 록	제출여부
① 제출서류 총괄표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② 응시원서(필수)	☐ 제출 ☐ 미제출
③ 이력서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④ 자기소개서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⑦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⑧ 조리 업무 관련 경력(재직) 증명서(우대사항 해당자)	☐ 제출 ☐ 미제출
⑨ 4대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 중 1종 1부(우대사항 해당자)	☐ 제출 ☐ 미제출
⑩ 소득금액 증명서(전 근무기간) 1부(우대사항 해당자)	☐ 제출 ☐ 미제출
⑪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우대사항 해당자)	☐ 제출 ☐ 미제출
⑫ 가점 관련 증빙서류 1부(가점 사항 해당자)	☐ 제출 ☐ 미제출

※ □에는 서류제출여부를 √하여 제출하시고, 증빙서류(사본)에 학교명, 출생지, 부모
직업 등 개인 신상이 표시되지 않도록 조치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성명 : (서명)

경북북부제3교도소장귀하

<별지서식 제2호>

응시원서

본인은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실시하는 공무원 근로자(조리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경북북부제3교도소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분야	공무원 근로자 (조리원)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우)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시표 (공무원 근로자)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분야	조리원
성명	(한글)	(한자)	
2026년 월 일			
경북북부제3교도소장 印			

주의사항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시험일 전일까지 경북북부제3교도소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도착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별지서식 제3호>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응시 번호	채용담당자 기재란	응시 기관	경북북부 제3교도소	응시 분야	조리원	성명 (한자)	
주소					연락처		
병역	군별	계급	복무기간		미필사유	생년월일	

나. 응시요건			
응 시 요 건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응시연령	복수국적
	☐ 예 ☐ 아니오	☐ 20세이상 20세미만	☐ 예 ☐ 아니오

다. 우 대 사 항				
자 격 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일	자격 검정기관	
경 력	근무기관(부서명)	근무기간(근무 연·월수)	직위(직급)	담당업무

라. 가 산 사 항				
가 산 요 건	구분	세부내용	발행기관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자 기 소 개 서

☐ 응시기관 : 경북북부제3교도소	☐ 응시분야 : 공무원근로자(조리원)
☐ 성 명 :	☐ 생년월일 :

*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 전망, 성품, 직장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 . 작 성 자 : (서명)

【작성요령】

- ① 자기소개서 양식 변경 불가
- ② A4용지 2매이내의 분량으로 작성(글자체는 휴먼명조, 글씨크기 14포인트, 줄간격 160%)

직무수행계획서

☐ 응시기관 : 경북북부제3교도소	☐ 응시분야 : 공무원근로자(조리원)
☐ 성 명 :	☐ 생년월일 :

*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직무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①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 취지 ②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③ 구체적 실천방안 순으로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 . 작 성 자 : (서명)

【작성요령】

- ① 직무수행계획서 양식 변경 불가
- ② A4용지 2매이내의 분량으로 작성(글자체는 휴먼명조, 글씨크기 14포인트, 줄간격 160%)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성명		응시기관	경북북부제3교도소
생년월일	. . .	응시분야	공무직 근로자(조리원)

본인은 법무부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시행하는 공무직 근로자(조리원)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경북북부제3교도소가 실시하는 자격, 경력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경북북부제3교도소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는 공무원 근로자(조리원)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 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 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u>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경력·학위 등</u>	공무원 근로자 채용 관리	<u>5년</u>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진행 할 수 없어 공직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u>주민등록번호</u>	공무원 근로자 채용 관리	<u>5년</u>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진행 할 수 없어 공직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u>범죄경력자료</u>	공무원 근로자 채용 관리	<u>5년</u>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진행 할 수 없어 공직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u>대구출입국외국인 사무소</u>	공무직 근로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u>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u>
<u>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u>	공무직 근로자 채용 관리	자격, 경력, 단증, 취업지원대상자 등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u>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u>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을 날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시험 실시기관이
조치 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u>법무부</u> <u>교정본부</u>	<u>시험 응시자격</u> <u>정지여부 회신</u>	성명, 주민등록번호	<u>5년</u>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는 보유기간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경북북부제3교도소장 귀하

<별지서식 제8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채용 서류 반환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경북북부제3교도소장 귀하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별지서식 제9호>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경북북부제3교도소 공무원근로자(조리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이드라인 제23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경북북부제3교도소장 귀하

<별지서식 제10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u>공직자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u>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해당 ☐ 비해당 ☐
2. '<u>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u>'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	해당 ☐ 비해당 ☐
3-1. 해당 부패행위로 <u>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u>	해당 ☐ 비해당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u>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u>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해당 ☐ 비해당 ☐
4-1. 해당 부패행위로 <u>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u>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u>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u>	해당 ☐ 비해당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해당 ☐ 비해당 ☐
1, 2, 3-1, 3-2 (모두 충족) ⇒ <u>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u>	해당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u>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u>	해당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 년 월 일

생년월일

지 원 자

(서명)